

학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0. 9. 5.
개정 2003. 9. 25.
개정 2006. 3. 1.
개정 2008. 4. 1.
개정 2012. 2. 21.
개정 2016. 1. 29.
개정 2016. 8. 30.
개정 2022. 4. 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학산고등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개정 2006. 3. 1)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묵제학원 정관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학산고등학교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3. 1.)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후 1기(2년)는 쉬어야 한다.(개정 2012. 2.21), (개정 2016. 1.29), (개정 2016. 8.30)
- ② 지역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하여 한 차례만 중임한다.(신설 2016. 8.30)
- ③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에 시작한다.(개정 2016. 1.29)

제4조(위원의 자격)

- ① 삭제(2003. 9.24)
- ②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중인 자로 한다.
- ③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

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개정 2016. 1.29)
-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 2.21)
-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원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1.29)

제6조(위원의 당연퇴직)

- ①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개정 2016. 8.30)
 1.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한 때. 다만, 자녀학생의 졸업과 전학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16. 1.29), (개정 2016. 8.31)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개정 2016. 8.31)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개정 2016. 8.30)
 4.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발견된 때.(개정 2012. 2.21)
 5.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때.
-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6. 8.30)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① 당원은 지역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역위원의 정수가 1명인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 8.30)

제8조(위원선출일) 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 끝나는 날 전까지 선출한다.(개정 2012. 2.21) (개정 2016. 1.29)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회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부모 3명, 교직원 2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 3명중에서 무기명 투표 또는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교직원 2명중에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또는 호선으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선출 곤란 사유가 있을 때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단 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동일할 때는 무투표로 전원 선출한다.(개정 2016. 1.29)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홍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로 당선자로 한다.

⑦ (선거인 명부 작성시)

1. 직선의 경우 학생이 1인 이상일 때 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2. 간선의 경우 학년 간선일 때 자녀의 학년이 다른 경우 부·모 중 1명이 투표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음.
3.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단 후보자가 2배수 이내일 때는 무투표로 전원 추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기간제교사의 선거권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후보자가 위원 정수와 동일할 때는 무투표로 전원 선출한다.

①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3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 2.21)

②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2.21)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 2.21)
-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및 부재시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참석자중 최연장자의 주재로 임시위원장으로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조개정 2016. 1.29).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운영한다.(단서조항신설 2008. 4. 7), (단서조항개정 2016. 8.30.)

- ② 소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예비심사를 수행하며 심사가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재적위원 3분의1을 넘지 못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위원회의 기능

제18조(기능사항)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4. 8.)
 -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5.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6.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9.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단, 특정 써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10.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 2022. 4. 8)
 13. 학교법인 개방형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4.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제1항제9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신설 2012. 2.21)
- ④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2.21, 개정 2022. 4. 8)
- ⑤ 제1항제7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대의원회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신설 2012. 2.21)
- 제19조(학교운영지원비 및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① 위원회는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각출 받을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보호를 받는 자, 수업료 감면 기준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이하 “지원비 등”이라 한다)의 규모, 모금방법, 사용처 등은 위 원회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지원비 등 조성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9)
- ⑤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되,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개정 2016. 1.29)
- ⑥ 지원비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결과를 공개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0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이나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 2.21)
- ③ 회기는 집회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 2.21) (개정 2016. 1.29)
- ⑥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6. 8.30)
-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의 개회, 휴회, 폐회 및 기타 절차는 일반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21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개정 2016. 1.29)

제22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2.21) (개정 2016. 1.29)
② 삭제(2003. 9.24).

제23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 서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조개정 2012. 2.21)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개정 2012. 2.2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항개정 2012. 2.21)

제25조(건의사항 처리) ① 정관 제100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운영) ①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케 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 대표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개정 2022. 4. 8)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심의,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 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2. 4. 8)
-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조신설 2016. 1.29, 개정 2022. 4. 8)

제7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등)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100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8)

③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읍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 8.30)

제28조(운영경비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개정 2016. 1.29)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9)

제32조(기타사항) 본 위원회의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은 교직원전체회의의 의결로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경과 조치) ①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위원으로 선출된 때부터 2001년 3월 31일자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자문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과-9410,(2005.10.04))

제1조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교육혁신과-691, 2012.01.18.)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산고등학교-355, 2016. 1.22)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산고등학교-7012, 2016. 8.23)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민주시민교육과-5184, 2022. 3.23)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